

의안번호	제 499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 290 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5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9
----------	-----

제출연월일 : 2010. 5. 2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 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3조)

- 1)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3)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 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라.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안 제6조)

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내지 제10조)

- 1)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 2)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4)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바.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1조)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사.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2조 및 제13조)

- 1)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2)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

아.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4조)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보상금 소요액 추정 후 추경 또는 본예산('11년) 반영

나.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0. 4. 9. ~ 4. 28.
 - 나)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 나.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2. "공익신고"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조리행위"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제4조(공익신고 기한)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익신고 방법 등) ①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사항 중 신고자 또는 부조리행위 공무원등의 인적사항, 부조리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부조리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부조리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공보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등 및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공익신고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의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서식]

공익 신고서			
접수일			접수(문서)번호
신고자	직·성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예금계좌번호		
신고 대상자	직·성명		
	소 속		
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 서류			
비 고			
<p>「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충청북도교육감 귀하</p>			